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4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1.)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

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및 종류·채권의 이자율·채무부담 금액·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기 등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